

제 2595호
2025. 3. 6.

발행인 : 도봉구청장
편집인 : 홍보정책과
전화 : (02)2091-2903

선 략

구 보

□ 조례

- 제183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 제1838호 자원봉사자 우대 및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12
- 제183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2
- 제184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 제184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36
- 제184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 제184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48
- 제184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56
- 제184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59

□ 훈령

- 제20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65

□ 고시

- 2025-1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71

□ 공고

- 제2025-411호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장비계획 수립 및 장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77

공 략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오언석

2025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봉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봉구 토박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계속하여 5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선정방법)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봉구 토박이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계속하여 50년 이상 도봉구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을 도봉구 토박이로 선정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등으로 거주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도봉구 토박이 신청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봉구 토박이 신청자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토박이증 발급 및 인증패 수여) ① 구청장은 도봉구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에게 도봉구 토박이 인증패를 수여하고 도봉구 토박이증(이하 “토박이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토박이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토박이증(재)발급 신청서와 사진 1장을 제출해야 한다.

③ 토박이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유효기간의 만료로 재발급 또는 갱신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토박이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토박이증 발급 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토박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⑥ 토박이증은 도봉구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의로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5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도봉구 토박이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봉구 토박이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전시회 등 관련 행사 개최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구청장은 토박이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련 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 관계 규정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종으로 감면할 수 없다.

1.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종량제 봉투 제공)
2. 도봉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수강료·이용료
3. 도봉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제6조(지원 중지 등) ① 구청장은 도봉구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도봉구 관외로 전출하였거나 주민등록의 말소 등 실제로 도봉구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봉구 토박이 신청서

접수기관			
대 상 자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입 일	(년째 거주중)		
연 락 처	자택: () 핸드폰: ()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주민등록표 초본 외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원장 등) ※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거주기간 확인이 불충분한 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1)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 도봉구 관내 여부 2) 도봉구 관내 연속 거주기간 50년 이상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 ※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 토박이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0 년 도봉구 토박이 발굴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표 초본(구주민등록표 포함) 등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 등	도봉구 토박이 거주기간 확인	수집일로부터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선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주민센터 자치행정과	도봉구 토박이 거주기간 확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표 초본 등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 등	수집일로부터 1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어 선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본인성명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토박이증 (재)발급 신청서

성명		사 진 (3.5cm×4.5cm)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신청내용	신규 ☐ 재발급 ☐ 갱신 ☐	
재발급사유	분실 ☐ 훼손 ☐ 유효기간 만료 ☐	
상기 본인은 도봉구 토박이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인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영리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도봉구 토박이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도봉구에서는 도봉구 토박이증 발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padding: 5px;">수집·이용 항목</th> <th style="padding: 5px;">수집·이용 목적</th> <th style="padding: 5px;">보유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진</td> <td style="padding: 5px;">토박이증 발급 및 관리</td> <td style="padding: 5px;">토박이증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td> </tr> </tbody> </table>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진	토박이증 발급 및 관리	토박이증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진	토박이증 발급 및 관리	토박이증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도봉구 토박이증 발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본인 월 성명 일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토박이증 발급 대장

발급번호	발급일자	선정년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행정동)	구분 (신규/ 재발급)	수령현황			회수일	회수사유
							수령일자	수령인	서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도봉구를 생활 터전으로 삼고 50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여 선정된 도봉구 토박이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제1조)

나. 도봉구 토박이의 정의(제2조)

다. 선정방법(제3조)

라. 토박이증 발급 및 인증패 수여(제4조)

마. 도봉구 토박이에 대한 지원 등(제5조)

바. 지원 중지 등(제6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의결된
도봉구 자원봉사자 우대 및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 오언석

2025년 3월 6일

자원봉사자 우대 및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지하1층 체력단련실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개월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사용료 징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청소년,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는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감면
-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 둘 이상의 감면사유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

제2조(「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수강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경

시설명	구 분	감경 비율	비고
둘리뮤지엄	1. 관람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라.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마. 둘리 생일 기념 행사 기간 바. 둘리뮤지엄 개관 기념 행사 기간 사. 도봉구와 자매결연(우호교류)을 맺은 도시 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50퍼센트	관련증명서 지참(복지 카드, 신분 증, 자원봉 사자증)
	2. 대관료 가. 구가 후원하는 행사		

제6조(「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

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아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별표 2 비고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의 사용료는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

별표 3 비고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의 사용료는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

제7조(「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강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10호라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6]

도봉구민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제12조 관련)

사용료 감면

구 분	감면 비율
도봉구(도봉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전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공목적의 행사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50퍼센트 (음악연습실 및 녹음실에 한정함)

수강료 감면

구 분	감면 비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퍼센트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20퍼센트 이내
<u>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u>	
※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의 감면 대상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사용료 등의 감면

구 분	감 면 대 상	감면 비율	비고
수강료 및 사용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100 퍼센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 ·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카드에 등록된 가족 포함)	50 퍼센트	
	· <u>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u>	<u>20</u> <u>퍼센트</u>	
	※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자원봉사자 우대 및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1. 개정이유

자원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도봉구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사용료, 수강료 등을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구 공공시설의 주차요금, 사용료, 수강료 등의 감면 비율 신설(제1조 ~ 제8조)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3

– 지하1층 체력단련실 사용료의 20퍼센트 감면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6

– 구민회관 수강료 20퍼센트 이내 감면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

–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감면

○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1조

– 평생학습관 수강료의 20퍼센트 감면

○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5

- 돌리뮤지엄 관람료의 50퍼센트 감면
-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10조, 별표 2, 별표 3
 - 체육시설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및 연습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 여성센터 수강료의 20퍼센트 감면
-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20퍼센트 감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오언석

2025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도시”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를 말한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스마트도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말한다.
4.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5. “융합”이란 통합된 정보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의 현안문제 해결 및 가치 창출 등으로 활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스마트도시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를 융합하여 지역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관의 책무) ① 기관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스마트도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기관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데이터를 융합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보유하는 데이터를 구에서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공유 및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스마트도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서울특별시 도봉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조성 기본 방향 및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3. 단계별 추진 전략 및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4. 정책 추진을 위한 자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서울특별시 도봉구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련되는 정책구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데이터 활용 및 융합 등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구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정보통신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시계획, 경제, 교통, 환경, 문화, 규제혁신, 혁신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구민
3.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스마트도시 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제15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두며,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겸한다.

제16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수집·활용·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데이터 플랫폼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제17조(데이터 플랫폼의 연계·통합)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활용한 구민 편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데이터의 융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 및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18조(데이터의 수집 등) ①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스마

트도시 조성 업무 추진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 및 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등의 자료를 요청한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 및 기관의 장은 중복 또는 유사 서비스 개발 및 제공 방지를 위해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관련 데이터 제공 및 사업 추진 전·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야 하며,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해야 한다.

제19조(구민 참여) ① 구민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활동을 통해 구의 스마트도시 추진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 제안 및 의견제시
2.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 참여 등

② 구민은 누구나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을 위한 정책제안을 할 수 있고, 우수사례로 채택된 제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

제20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에 대한 역량강화와 데이터 이용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경진대회 및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

제21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실적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나. 구청장 및 기관의 책무(제3조~제4조)

다.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라.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제7조~제13조)

마.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제15조)

바.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및 연계·통합에 관한 사항(제16조~제17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오언석

2025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행안전지도원”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정한 지역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자를 말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보행안전지도원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보행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안전지도원을 운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보행안전지도원을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지도원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민간활동 장려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보행안전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도봉구에서 실시하는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이하 “보행안전문화 조성활동”이라 한다)을 장려하고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문화 조성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협력체제 구축) 구청장은 구민들의 보행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에 주민 및 보행약자를 위해 ‘보행안전지도원 운영 및 지원’을 추가함에 따라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보행안전지도원’의 용어를 정의하고 구청장이 구민들의 보행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안전지도원’을 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2조 및 제12조)

나. ‘민간활동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함 (제13조)

다.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함 (제14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오언석

2025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3항 및 제23조에 따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라 한다)이란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자기결정권 및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영양, 일상생활돌봄 등의 개별적인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통합돌봄 제공기관”이란 제3조에 따른 통합돌봄 지원대상자에게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하여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통합돌봄 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통합돌봄을 지원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사람 중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통합돌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돌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조직구성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지원대상자 발굴, 이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비스별 추진 시책 및 추진 방법
4. 필요 재원의 규모와 지원방안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교육, 홍보, 연구, 평가,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6. 통합돌봄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통합돌봄 지원 서비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통합돌봄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에서의 주거 지원
2. 건강관리 및 예방사업, 보건의료 서비스 등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4. 가사활동 지원, 이동지원 등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돌봄
5. 그 밖에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돌봄 제공기관으로부터 통합돌봄을 제공 받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등의 지급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지정) ① 구청장은 통합 돌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를 통합돌봄 제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인력 및 예산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한 통합돌봄 제공기관에 대하여 예산 및 필요한 인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구청장은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돌봄 제공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라 지정된 통합돌봄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통합돌봄 사례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돌봄 사례회의(이하 “사례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사례회의의 구성은 행정기관의 실무담당자와 민간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의 건강, 주거, 돌봄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③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실무분과를 활용할 수 있다.
- ④ 사례회의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종합적 욕구 사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을 결정·실시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주민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합돌봄 제공에 대한 구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합돌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통합돌봄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복지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제1조, 안 제2조)

나. 통합돌봄 지원대상자 대해 규정(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제4조)

라. 통합돌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제5조)

마. 통합돌봄 지원 서비스에 대해 규정(제6조)

바. 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지정에 대해 규정(제7조)

사. 인력 및 예산지원에 대해 규정(제8조)

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에 대해 규정(제9조)

자. 통합돌봄 사례회의에 대해 규정(제10조)

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제11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오언석

2025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제184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육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바.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 사항에 맞추어 금품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 제11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인 선물의 범위에 5만원 이내인 상품권을 추가함(별표 1 제3호)

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상향함 10만원 → 15만원
(별표 1 제3호)

○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2항에 따른 기간(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중에는 30만원

다. 상품권에 대한 정의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맞추어 신설 규정함(별표 1 비고 다목)

라. 선물과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정함(별표 1 비고 라목)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오언석

2025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장애인등 보행약자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들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 보행약자(이하 “보행약자”라 한다)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경사로와 이동식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설치비용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 ①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지정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신청서(동의서)

신 청 인 (동 의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시 설 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경사로 설치 시설	시설위치		설치예정일	
	건물용도		경사로 종류	☐ 이동식 ☐ 고정식
	설치장소	※ 현장사진 첨부		
유의사항	시설주(건물·토지 소유자)가 위 사업으로 사업장에 경사로가 설치됨을 동의함.			☐ 동의 ☐ 비동의
	경사로 설치 지원 후 일체 관리 및 민원 사항 등 책임은 시설 관리자에 있음.			☐ 동의 ☐ 비동의
	현장 사정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며, 또한 설치 후 단순 변심으로 인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도봉구청에 철거를 요청할 수 없음			☐ 동의 ☐ 비동의
	신청인은 위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지 원 금 신청내역	신청금액	금 원		
	입금 계좌번호	(예금주:)		
	은 행 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도 각 1부.
 3.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정지 요구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비용 지원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신청서 기재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비용 지원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1. 제정이유

장애인등 보행약자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제1조~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제3조)

다. 경사로 설치 지원(제5조)

라. 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지원신청 및 결정(제6조~안 제7조)

마. 설치 및 정산(제8조)

바. 설치비용의 반환(제9조)

사. 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제10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오언석

2025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제1844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제1호 중 “5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일”을 “15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0일”을 “25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의장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신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해당 재직 기간 중 새내기도약 특별휴가 5일을 부여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기존 장기재직 휴가 일수를 조정·확대하여 직원 복지를 개선하고, 아울러 재직기간 5년 미만 신규 직원 대상 새내기도약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조정·확대함(제12조제10항)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 10일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 15일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 25일

나.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새내기들에 대하여 특별휴가 5일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함
(제12조제1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오언석

2025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제117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새로운”을 “다시”로 한다.

제3조 중 “민간위탁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봉구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제10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탁자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도봉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를 “심의회에서”로, “도봉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를 “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 경우,”를 “ 경우, 도봉구의회에 제출하고”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수탁기관 선정 시”를 “재계약 시 수탁기관의”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수탁자선정심의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탁자선정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계약의 경우 위탁기간은 연속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계약 총 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재계약일부터 기산하여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 이유

사무의 민간위탁 절차와 관련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민간위탁 사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체계에 맞게 내실 있는 민간
위탁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위탁·재계약 시 제출하는 자료에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적격자
심사 결과」 삭제(제4조의3제2항제7호)

나. 수탁기관 선정 위원회 변경(7조)

○ 민간위탁심사위원회 → 수탁자선정심의회

다. 수탁기관 선정 후 결과를 도봉구의회에 제출하는 규정 신설(제7조)

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기능 변경(제9조)

○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사 → 재계약 시 수탁기관의 적격자 심사

마. 수탁자 선정을 위해 수탁자선정심의회 규정을 신설(제10조의2)

바. 재계약 총 위탁기간에 대한 연속 10년 초과 제한 규정 신설(제12조)

○ 부칙을 통해 개정안 시행 후 최초 체결된 재계약 시점부터 기산

사. 법제처 정비 안내를 반영하여 이의신청 규정 삭제(제21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법령 위임 없는 개별규정 삭제

후 령

**서울특별시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오언석

2025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훈령 제20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며,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날까지 생일이었던 공무원 등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공무원 등 근로자의 생일 특별휴가를 실시하여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특별휴가 시행(제12조)

고 시

